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민의원·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0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김용민·문정복·한준호

김용만 • 박지원 • 이성윤

민형배 • 임미애 • 모경종

장경태 · 황운하 · 김재원

신장식 · 강경숙 · 김선민

김준형 • 이해민 • 차규근

박은정 · 서왕진 · 전현희

박성준 · 김승원 · 박균택

강득구・정춘생・조 국

의원(27인)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 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 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 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 함.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의요구"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해충돌"이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어 공정한 권한 행사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3. "해당 법률안"이란 재의요구 대상인 법률안을 말한다.
- 제3조(재의요구 권한 행사의 기준)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자제하여야 하고, 재의요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서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1.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 2.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 국가재정을 위태롭 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3.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제4조(이해충돌에 따른 재의요구 제한)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의요구를 회피하여야 한다.
 - 1. 해당 법률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 2. 해당 법률안이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 3. 그 밖에 해당 법률안의 내용 또는 취지를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국회의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 송부) ① 국회는 헌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할 때에 해당 법률안의 내용이 제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재의요구 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과 함께 송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견서는 「국회법」 제51조, 제79조 또는 제89조에 따른 발의, 제안 또는 동의를 거친다.
- 제6조(대통령의 존중 의무) 대통령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송부된 국회의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하

는 경우에는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서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